제86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해양보호생물 지정 추가(강화) ㅇ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3종을 새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포획·훼손·가공·유통·보관 등의 행위 제한 ▶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
2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영업 전부의 양수·도 심사 기준 신설(신설) 가. 영업 전부의 양도·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 (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3호) ㅇ 영업 전부의 양도의 경우, 영업양도의 불가피성,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ㅇ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,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▶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	1.중요
3	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공사계획의 인가 ·신고시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추가(강화) ㅇ 공사계획인가(신고)시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내진설계 대상 설비정착부 목록과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 ▶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시 불합격품의 수거·폐기 범위 확대(강화) ㅇ 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시 확인검사기관의 불합격품 수거·폐기의 범위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서 벤조피렌, 중금속 기준 초과 시까지 확대 ▶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.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(강화) ㅇ 인삼류 검사의 기준 · 방법을 위반한 자체검사업체의 가중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▶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	1.비중요 2.비중요
5	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감정평가서 작성(강화) ㅇ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시, 감정평가서 상 거래사례 선정내용, 사정보정내용, 가치형성요인 비교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함 ▶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	1.비중요
6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기술능력 기준 강화(강화)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2]의 1) 기계설비공사 등록기준 “기술능력”을 「기계설비법」과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서 요구하는 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을 현실화 하고자, 배치기술자 2명중 1인에 대해 기계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 ▶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입금지 품목 추가(신설) ㅇ 국내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에 석탄재, 폐타이어(대형타이어, 철심은 제외) 추가 고시 ▶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	1.비중요
8	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(환경부)	1.폐플라스틱 재활용연료 이용목표율 준수(신설) ㅇ 재활용지정사업자 적용 대상에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추가하고, 플라스틱 중 페트(PET)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 재활용가능자원(PET 재생원료) 이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부여 ▶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2조	1.비중요